

#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감염병 정보 Q&A

# 감염병 정보

#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질병의 공식 용어

2020년 2월 12일 기준 세계보건기구( WHO)에서  
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이름을 “COVID-19” 정함



우리나라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공식명칭

⇒ **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-19(약칭 '코로나19')** 라는  
한글 표현을 별도로 정함

##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

- 코로나바이러스는 동물 및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바이러스
- 사람에게 전파 가능한 코로나바이러스 : 현재 6종이 있음
  - 4종: 감기와 같은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
  - 2종 : MERS코로나바이러스, SARS코로나바이러스
- 이번 중국 우한시 폐렴 유행을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파된다고 알려짐.
-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공개된 염기서열분석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박쥐유래 사스 유사 바이러스와 89.1% 일치하는 것을 확인함.

## 코로나19 전파경로

- 코로나19는 감염된 사람이 기침, 재채기를 했을 때 공기 중으로 날아간 비말이 다른 사람의 호흡기로 들어가거나, 손에 묻은 바이러스가 눈·코·입 등을 만질 때 점막을 통해 바이러스가 침투하여 전염이 됨
- 감염된 사람의 비말이 물건 표면 등에 묻은 경우 다른 사람이 이 물건을 만진 후 눈,코,입 등을 만지게 되면 점막을 통해 바이러스가 침투하여 전파되므로 올바른 손씻기를 철저히 수행해야합니다.

# 코로나19 증상

- 가장 흔한 증상
  - 발열, 피로 및 마른 기침
  - 일부 경우 통증, 코막힘, 콧물, 인후염 또는 설사를 경험
- ❖ 감염되었지만 증상 및 불편함을 느끼지 않음
- ❖ 대부분 80%는 특별히 치료 없이 회복됨
- ❖ 코로나19에 걸린 6명 중 1명이 중병에 걸리고 호흡곤란 경험
- ❖ **고령자나 기저질환(고혈압, 심장질환, 당뇨병)있는 경우**
  - ⇒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때문에
  - ⇒ **발열, 기침, 호흡곤란이 있는 사람은 치료를 받아야 함**

# 코로나19의 무증상에서의 전파 가능성

- 주된 전파
  - 기침하는 환자가 배출한 비말의 흡입 또는 접촉
  - 가벼운 증상만 있어도 감염 가능
- 무증상자에게서 코로나19가 감염될 위험은 매우 낮음
- 전파 기간에 대한 연구의 평가가 지속되고 있고, 업데이트된 결과를 공유할 예정임

# 코로나19 환자 정의

- (확진)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
  - (의사) 최근 14일 이내에 확진환자와 접촉한 자 +
  - (조사)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(홍콩, 마카오 포함) 등 코로나19 지역 전파가 있는 국가 방문 +
  - (조사) 최근 14일 이내에 '국내 집단발생' 과 역학적 연관성 +
- 발열(37.5℃이상) 또는  
호흡기증상(기침, 호흡곤란 등)이  
나타난 자
- (조사)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

\*조사대상 유증상자

- 1) (확진)- 확진 환자/ (의사)- 의사 환자/ (조사)- 조사대상 유증상자
- 2) '+' 의 표시 : ' 또는'으로 해석한다.



# 2020.02.21 코로나 3법 통과

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감염병 예방법, 검역법, 의료법 개정안 등

1. 감염병 지역 외국인 입국 시 출입국 정지 요청 가능

2. 제 79조의 3(벌칙) 당국의 검사 및 격리 및 치료 거부 시

(현행) 300만원 이하의 벌금

( '20.04.05 시행)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 처분

3. 제 40조의 3(수출금지감염병 유행 시 공급 부족 발생하면 마스크,

손소독제 등 수출 및 반출 금지 가능

**출처**

**질병관리본부**

**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**

**대응 지침서 7-3판 Q&A 게시판  
(2020.03.15)**